

보도시점

2023. 10. 13.(금) 조간
2023. 10. 12.(목) 12:00

배포 2023. 10. 12.(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체계 구축 -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4일(수) 제30차 본회의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검토해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은 약자복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정책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사회적 약자 대상 여부, 공적지원 필요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간사인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에 따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성 지원 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되고, 서비스 복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를 통한 고용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책임자	과 장	신은경 (044-202-3730)
		담당자	사무관	조강훈 (044-202-3738)



- <붙임> 1.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소개

- (제도취지)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중앙-지방 제도 정합성 유지)을 위해 운영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약자복지)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의
 -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다자녀, 한부모, 청소년부모 등 사업별로 다양)
 - 지자체의 보충적 지원 필요성은 공적지원이 필수적인지(사업의 타당성)에 따라 판단
 - 지원수준의 적절성은 유사한 중앙사업 유무 및 그 사업의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광역 + 기초 지자체 지원금액의 총합으로 판단
- (사회서비스 중심) 경쟁적 현금복지 지양, 정책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로 설계하도록 협의
 -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컨설팅,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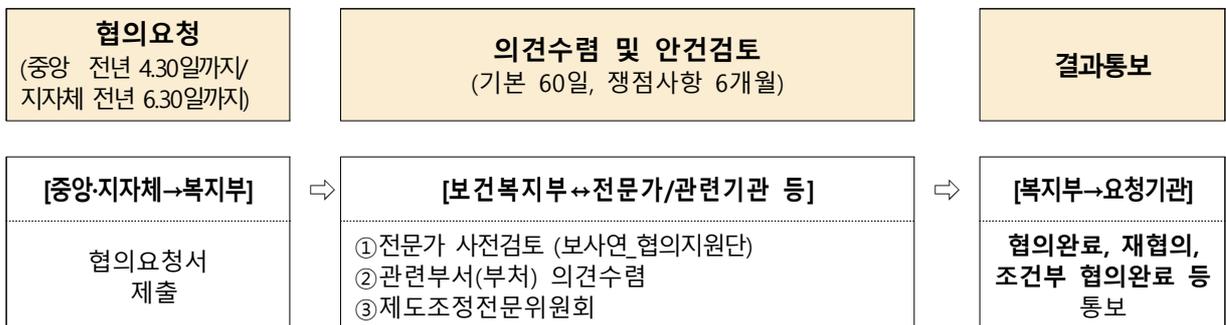
□ 사전협의제도 개요

- (목적)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 및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13년 이후)

◆ (사전협의 대상)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제도 신설·변경

- (사회보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5호)

- (협의기준) 신설·변경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재정·지역복지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특히, 지자체는 자치분권 취지와 국가 사회보장체계 정합성을 고려
- (업무절차) 중앙·지자체 협의 요청 시, 전문가·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종합검토를 거쳐 결과 통보



※ 협의 미성립 시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조정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